

광주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가단5356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규련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노엘

변 론 종 결 2021. 11. 5.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24. 접수 제154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선택적으로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24. 접수 제154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장, 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C은 2017. 5.경부터 2020. 8.경까지 원고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24. 광주지방법원 2020카단1851호로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후, 같은 달 27. C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61541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7. 2. C이 2017. 7. 14.경부터 2020. 8. 6.까지 총 219회에 걸쳐 원고 자금 합계 236,163,585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한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C은 원고에게 236,163,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다. C은 2020. 8. 24. 배우자인 피고2)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24. 접수 제154190호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그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초 소유자인 피고 아버지 D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가정법원 2020드단39338호 사건 판결 이유에서 C의 재산유지관리에 있어 기여도가 35%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은 피고가 편의상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그 후 C을 상대로 협의이혼신청을 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제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D이 2018. 7.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로부터 C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김용태

부동산의 표시

1. 광주 남구 대 166㎡ 중 1/2

2. 위 지상의 아래 기재 건물 중 1/2

[도로명 주소 광주 남구]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1.13㎡

2층 53.81㎡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2.42㎡

1) 원고는 선택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C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마쳐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한편 피고와 C 사이에 광주가정법원 2021르4863호(1심 2020드단39338)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